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건축과(건축과장)
(경유)
제목 건축허가(신축)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(합정동 377-4,23)

1. 건축과-32607호(2017.12.22, 검토서류 제출일 2018.01.12.)와 관련입니다.

2. "마포구 합정동 377-4, 23호"상에 신축하는 건물은 지하철 2호선 합정역 ~ 당산역간 본선 구조물과 인접하여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여건으로「철도안전법 제45조」등에 의거 우리 공사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대상이므로 건축주가 착공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축공사에 따른 지하철 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비서류 목록(지하철 소관사항)
가.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
나. 지하철과의 상관관계 도면(현황측량 근거)
다. 지반조사보고서
라. 설계도서(흙막이 구조계산서 포함)
마. 지하철 안정성 검토서

붙임 :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양식 1부. 끝.

서울교통공사사장

과장 김윤경 부장 안승용 처장 전결 01/15 김만화

협조자

시행 토목처-515 (2018.01.15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-48(용답동)/http://www.seoulmetro.co.kr
전화 02-6311-9884 전송 02-6311-4280 / genie4u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